

## 광명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

제정 1988. 5. 10 조례 제 481호  
개정 2007. 3. 28 조례 제1507호  
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  
일부개정 2017. 3. 12 조례 제2242호(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3. 28>

제2조(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)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3. 28>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2.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
3. 기타 참고서류

제3조(채무보증의 승인)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채무보증서의 교부)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해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

광명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

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교부한다.

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.

제5조(보증채무의 변경)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 삭제 <2017. 3. 12>

제7조(보증채무의 이행)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안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3. 28>

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3. 28 조례 제150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3. 12 조례 제2242호,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

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# 채 무 보 증 신 청 서

제 호

광 명 시 장 귀하

주채무자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명(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)
2. 내 용
  - 가. 채권자
  - 나. 채무액
  - 다. 이자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
  - 라. 상환기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간
  - 마. 상환계획
3. 사 유
  - 가. 주채무 발생
  - 나.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
  - 다.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
  - 라. 기타 참고사항
4. 준수사항
  - 가.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  - 나.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  - 다.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자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  - 라.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  - 마. 주채무자는 타채무자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08. 6. 16>

채 무 보 증 인 통 지 서

제 호

귀하

광 명 시 장 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- 1. 주채무자
- 2. 채무건명
- 3. 채무액
- 4. 이자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
- 5. 상환기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간
- 6. 상환재원
- 7. 담보
- 8. 용자재원
- 9. 관계기관
- 10. 채무보증근거
- 11. 기타
- 12. 준수사항

- 가.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- 나.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- 다.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라.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마.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- 바. 주채무자는 타채무자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

광명시장 귀하

채권자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

1. 주채무자
2. 채무건명
3. 채무액
4. 이자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
5. 상환기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간
6. 상환재원
7. 담보
8. 용자재원
9. 기타
10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08. 6. 16>

## 채 무 보 증 서

제 호

귀하

광 명 시 장 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.

1. 주채무자
2. 채무건명
3. 채무액
4. 이자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
5. 상환기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간  
(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)
6. 상환재원
7. 담보
8. 용자재원
9. 관계기관
10. 채무보증근거
11. 기타
12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,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5호 서식] 삭제 <2017. 3. 12>